

현금카드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6.2.1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1 조 (내용생략)</p> <p>제 2 조(카드의 이용)</p> <p>① ~ ⑤ (내용생략)</p> <p>⑥카드 거래시 당행 및 참가은행은 계좌번호,비밀번호 등이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예금주 본인으로 인정하고 거래에 응한다. (2012.9.18 신설)<신설 2012.9.18></p> <p><신설></p> <p>⑦ ~ ⑩ (내용생략)</p> <p>제 3 조(카드의 분실,도난신고 및 면책)</p> <p>이용자가 카드의 분실,도난,훼손,오손 하였을때에는 즉시 은행 영업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제 4조 ~ 제7조 (내용생략)</p>	<p>제 1 조 (좌 동)</p> <p>제 2 조(카드의 이용)</p> <p>① ~ ⑤ (좌 동)</p> <p>⑥카드 거래시 당행 및 참가은행은 계좌번호,비밀번호 등이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예금주 본인으로 인정하고 거래에 응한다. (2012.9.18 신설)<신설 2012.9.18></p> <p><u>다만, 은행과 소액거래(5만원 이하 거래)에 대하여 본인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카드의 비밀번호 입력 생략이 가능하다</u></p> <p><u><신설 2016.2.1></u></p> <p>⑦ ~ ⑩ (좌 동)</p> <p>제 3 조(카드의 분실,도난신고 및 면책)</p> <p>이용자가 카드의 분실,도난,훼손,오손 하였을때에는 즉시 은행 영업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u>다만 소액거래(5만원 이하 거래)에 대하여 카드의 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 승인이 된 경우 예금주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에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참가은행이 보상한다.<신설 2016.2.1></u></p> <p>제 4조 ~ 제7조 (좌 동)</p>	<p></p> <p>본인확인절차생략 근거 명시</p> <p>본인확인 생략에 대한 면책 예외 근거 명시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